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이하 집합적으로는 “아세안” 혹은 “아세안 회원국들”, 각각으로는 “아세안 회원국”이라 한다)인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왕국, 인도네시아 공화국, 라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연방, 필리핀 공화국, 싱가포르 공화국, 태국왕국 그리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는(이하 각각으로는 “당사자”, 집합적으로는 “당사자들”이라 한다),

2006년 8월 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상기하고,

초민감품목 E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실행관세율을 각 당사국이 유지할 권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협정 부속서 2를 더욱 상기하며,

라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초민감품목 E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을 상품무역협정에 통합하기를 희망하고,

협정 제17조가 모든 개정은 당사자들간에 서면으로 상호 합의된다고 규정하는 것에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협정 부속서 2에 대한 개정

협정 부속서 2 부록 2는 이 문서에 의하여 라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초민감품목 E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을 통합하기 위해 개정된다.

제 2 조

발 효

1. 이 의정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형성한다. 이 의정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90일 후에 발효한다.

2. 각 당사자가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다른 모든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3. 당사자가 이 의정서를 서명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의정서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에 관하여 이 의정서는 국내절차의 완료를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

제 3 조

기 탁 처

아세안 회원국들을 위하여 이 의정서는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각 아세안 회원국에게 인증등본을 신속히 제공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 정부에게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0년 11월 30일 태국 방콕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부록 2

초민감품목 목록

부록 2
초민감품목 목록

그룹 표: 관세양허 예외품목

라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 연번 | HS 코드 | 품목 |
|----|---------|---|
| 1 | 2203.00 | 맥주 |
| 2 | 2208.30 | - 위스키류: |
| 3 | 2402.20 | - 켈런(담배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 |
| 4 | 8702.10 |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의 것 |
| 5 | 8702.90 | - 기타 |
| 6 | 8703.10 | - 설상주행용 차량, 골프용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
| 7 | 8703.21 | - - 실린더용량이 1,000cc 이하인 것 |
| 8 | 8703.22 | - - 실린더용량이 1,000cc 초과 1,500cc 이하인 것 |
| 9 | 8703.23 | - -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 |
| 10 | 8703.24 | - - 실린더용량이 3,000cc를 초과하는 것 |
| 11 | 8703.31 | - - 실린더용량이 1,500cc 이하인 것 |
| 12 | 8703.32 | - -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2,500cc 이하인 것 |
| 13 | 8703.33 | - - 실린더용량이 2,500cc를 초과하는 것 |
| 14 | 8703.90 | - 기타 |
| 15 | 8704.10 | -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
| 16 | 8704.21 | -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
| 17 | 8704.22 | - - 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것 |
| 18 | 8704.23 | - -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 |
| 19 | 8704.31 | -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
| 20 | 8704.32 | - - 총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 |
| 21 | 8704.90 | - 기타 |
| 22 | 8706.00 | - 엔진을 갖춘 새시(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자동차용에 한한다) |
| 23 | 8707.10 | - 제8703호의 차량용의 것 |
| 24 | 8707.90 | - 기타 |
| 25 | 8708.10 | - 완충기와 그 부분품 |
| 26 | 8708.21 | - - 안전벨트 |
| 27 | 8708.29 | - - 기타 |
| 28 | 8711.10 | - 실린더용량이 50cc 이하인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
| 29 | 8711.20 | - 실린더용량이 50cc 초과 250cc 이하인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
| 30 | 8711.30 | - 실린더용량이 250cc 초과 500cc 이하인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
| 31 | 8711.40 | - 실린더용량이 500cc 초과 800cc 이하인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
| 32 | 8711.50 | - 실린더용량이 800cc를 초과하는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
| 33 | 8711.90 | - 기타 |
| 34 | 8714.11 | - - 안장 |
| 35 | 8714.19 | - - 기타 |
| 36 | 8714.91 | - - 프레임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
| 37 | 8714.92 | - - 휠 립과 스포크 |
| 38 | 9504.10 | - 비디오 게임용구(텔레비전 수상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 39 | 9504.30 | - 기타의 게임용구(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 및 기타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것에 한하며 불링 유희장 용구는 제외한다) |
| 40 | 9504.90 | - 기타 |